

보도 일시	2022. 12. 14.(수) 12:00			
담당 부서 <총괄>	지방재정경제실 재정정책과	책임자	과 장	홍성철 (044-205-3702)
		담당자	사무관	허 정 (044-205-3721)
			주무관	전지양 (044-205-3717)

내년부터 1,600cc 미만 자동차 구입 시 채권 의무매입 면제

- 사회 초년생·신혼부부, 소상공인·자영업자 등 매년 116만 명 약 920억 원 혜택 예상 -
- 채권 표면금리 인상(1.05%→2.5%)으로 연간 국민부담 2,800억 원 감소 예상 -

< 지역개발채권·도시철도채권(지하철 채권)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(요약) >

개선방안	기대효과
① 1,600cc 미만 비영업용 승용차 등록 시 채권 의무매입 면제	매년 76만명의 소형 자동차 구매자, 약 800억원 부담 감소
② 자치단체와 2,000만원 미만 계약 체결 시 채권 의무매입 면제	매년 40만명의 소상공인·자영업자, 약 120억원 부담 감소
③ 채권 표면금리 인상(1.05%→2.5%)	매년 국민의 할인매도 비용 약 2,800억원 부담 감소

(사례①) 사회 초년 직장인 A씨는 최근 소형 자동차(1,598cc, 2,000만원)를 구매하면서, 약 163만원 정도의 도시철도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하거나, 아니면 약 33만원을 지불하고 채권을 즉시 할인 매도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불만
⇒ (개선방안) 1,600cc 미만 자동차 신규·이전 등록 시, 채권 매입 면제

(사례②) 자영업자를 하는 B씨는 최근 1,800만원의 물품계약을 체결하면서, 약 32만원의 지역개발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채권을 매입하여 5년간 보유할 것인지, 아니면 비용을 지불하고 채권을 즉시 할인 매도할 것인지 고민
⇒ (개선방안) 자치단체와 2,000만원 미만 계약 체결 시, 채권 매입 면제

(사례③) 직장인 C씨는 중형 자동차(2,500cc, 5000만원)를 구매하면서, 지역 개발채권을 즉시 할인 매도하는 비용이 최근 금리 인상으로 약 90만원까지 증가했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 당황
⇒ (개선방안) 채권 표면금리 인상(1.05%→2.5%)으로 과도한 할인매도 부담 축소

- 행정안전부(장관 이상민)는 내년부터 전국 시·도(창원시 포함)와 함께 사회 초년생·소상공인 등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한 「지역개발채권 및 도시철도채권 개선방안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.

[지역개발채권·도시철도채권(지하철채권) 개요 및 현황]

- (개념) 국민이 자치단체에 자동차를 등록하거나, 인·허가를 받거나, 자치단체와 공사·용역·물품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채권
 - (법적근거 및 종류) 지방공기업법 제19조, 도시철도법 제21조 등
 - (지역개발채권) 서울 제외 전 시·도 발행(창원시 포함) / 자치단체 지역개발기금 재원으로 조성하여 도로 건설·유지보수, 상하수도, 주택개발사업 등에 활용
 - (도시철도채권) 서울·부산·대구 발행 / 자치단체 도시철도특별회계 재원으로 조성하여 지하철 공사 및 유지보수 사업 등에 활용
 - (금리) 1.05%(단, 서울 도시철도채권은 1%)
 - (상환) 5년 만기 원리금 일시 상환(단, 서울 도시철도채권은 7년 만기 일시 상환)
- ※ 매입대상 및 요율, 표면금리 등은 각 시·도의 조례로 규정

- 먼저, 1,000cc~1,600cc 미만 비영업용 승용차를 신규·이전 등록할 경우 지역개발채권·도시철도채권의 의무매입을 면제하여 사회 초년생, 신혼부부 등의 자동차 구매 부담을 완화하기로 하였다.

※ 1,000cc 미만 비영업용 승용차는 지역개발채권 등 매입 면제 既 시행 중

- 현재 국민이 자동차를 구매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있는 요율(차량가액의 최대 20%)만큼 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한다.
- 채권 매입 5년(서울은 7년) 후 만기가 도래하면 원리금을 상환받을 수 있으나, 대다수의 국민은 금전적 부담 등으로 채권을 매입하는 즉시 일정한 비용을 지불하고 할인 매도하고 있는 상황이다.

(예) 서울시 주민이 소형 자동차(1,598cc, 2,000만원)를 신규 구매할 경우, 차량가액(부가가치세 제외)의 9%인 약 163만원의 서울시 도시철도채권을 의무 매입해야 함

- 만약 채권을 매입·보유하지 않고 즉시 매도할 경우 채권시장에서 할인율(20%, 11.30. 기준)이 적용되며, 약 33만원이 할인된 130만원에 매도 가능

- 이에 행정안전부와 전국 시·도(창원시 포함)는 국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,000cc~1,600cc 미만 자동차에 대한 채권 의무매입을 면제하기로 하였다.
- ※ 인천은 1,000~1,600cc 미만 자동차 既 면제 / 부산·대구·제주·창원은 한시 면제 중

-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매년 약 76만 명*('21년 등록 대수 기준)의 소형 자동차 구매자가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.

* '21년 1,000~1,600cc 비영업용 승용차 : 신규등록 약 28만대, 이전등록 약 48만대

- 전체 채권 의무매입 면제 규모는 총 5,000억 원 수준이며, 할인매도 비용 등 국민 부담은 매년 약 8백억 원*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.

* 서울(7년 만기)은 할인을 20%, 타 시·도(5년 만기)는 할인을 16%로 가정(11.30. 기준)

- 한편, 추가적인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하여 일부 시·도는 소형 화물차에 대한 채권 매입 면제*, 1,600cc 이상 자동차에 대한 채권 매입 요율 인하** 등도 함께 추진하기로 하였다.

* 전북(3.5톤 이하 비영업용 소형 화물차)

** 1,600cc 이상: 전북(6%→4%), 경북(8%→4%) / 2,000cc 이상: 전북(10%→5%), 경북(12%→8%)

- 둘째, 자치단체와 2천만 원 미만의 공사·물품·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지역개발채권·도시철도채권의 의무매입을 면제하여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·자영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로 하였다.

- 현재 자치단체와 공사·물품·용역 등 계약을 체결하는 업체는 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계약금액의 일정 요율(계약금액의 최대 2.5%)만큼 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한다.

(예) 부산시 중소기업이 부산시와 1,800만원 상당의 물품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, 계약 금액(부가가치세 제외)의 2%인 약 32만원의 부산시 지역개발채권을 의무 매입해야 함
- 만약 채권을 매입·보유하지 않고 즉시 매도할 경우 채권시장에서 할인율(16%, 11.30. 기준)이 적용되며, 약 5만원이 할인된 27만원에 매도 가능

- 행정안전부와 전국 시·도(창원시 포함)는 소상공인·자영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2천만 원 미만의 소액 계약에 대해 채권 의무매입을 면제하기로 하였다.

※ 경기·경북은 2,000만원 미만 계약 既 면제

- 제도개선을 통해 매년 약 40만 명('21년 계약체결 건수 기준)의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가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.

- 전체 채권 의무매입 면제 규모는 총 800억 원 수준이며, 할인매도 비용 등 국민 부담은 매년 약 120억 원* 감소할 전망이다.

* 서울(7년 만기)은 할인을 20%, 타 시·도(5년 만기)는 할인을 16%로 가정(11.30. 기준)

□ 전국 시·도(창원시 포함)는 1,000~1,600cc 미만 소형 자동차 및 2천만 원 미만 소액 계약 등의 채권 매입을 면제하기 위해 오는 2023년 2월말까지 시·도별 조례를 개정하고 2023년 3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*할 예정이다.

* 인천, 제주는 '22.12월 조례 개정을 완료하고 '23.1월부터 시행 예정

○ 각 시·도에서는 채권 의무매입 면제를 확대함에 따라 지역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이 일부 감소하는 측면도 있으나, 국민 부담 경감 차원에서 세출 구조조정 등을 통해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.

□ 셋째, 2023년 1월부터는 지역개발채권·도시철도채권의 표면금리(이자율)를 인상하여 과도한 할인매도 부담과 이자 손실 등 국민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.

○ 현재 채권 표면금리는 1.05%(서울 1%)로 한국은행 기준금리(3.25%)보다 훨씬 낮은 상황이다.

○ 따라서, 채권을 매입하여 만기까지 보유하는 국민은 시중금리(4~5%대)와 비교 시 상당한 이자 손실을 부담해야 하며, 낮은 표면금리로 인해 국민이 채권을 즉시 매도하는 경우에도 높은 할인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.

○ 이러한 국민 손실을 줄이기 위해 전국 시·도(창원시 포함)는 채권의 표면금리를 현재 1.05%(서울 1%)에서 2.5%로 일제히 인상하기로 하였다.

- 이를 위해 올해 12월말까지 각 자치단체별 조례 시행규칙 등을 개정하고, 2023년 1월부터 인상된 표면금리를 적용할 예정이다.

○ 채권 표면금리 인상으로 국민의 즉시 매도할인 손실이 매년 약 2천 8백억 원*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, 국민생활과 기업의 경제활동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.

* 표면금리 인상으로 할인율이 서울은 20%→12%로, 타 시·도는 16%→10%로 조정 가정

□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“최근 고금리, 고물가 등으로 국민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국민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낼 수 있기를 바란다”라며, “향후 추가적인 제도개선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협력해 나갈 것”이라고 밝혔다.

행정안전부 <총괄>	지방재정경제실 재정정책과	책임자	과 장	홍성철	(044-205-3702)
		담당자	사무관	허 정	(044-205-3721)
			주무관	전지양	(044-205-3717)
자치단체	서울특별시 재정담당관	책임자	과 장	강진용	(02-2133-6860)
		담당자	사무관	김현숙	(02-2133-6862)
	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과	책임자	과 장	문 혁	(02-2133-4331)
		담당자	사무관	김 신	(02-2133-4333)
자치단체	부산광역시 예산담당관	책임자	과 장	김성은	(051-888-2050)
		담당자	사무관	임윤조	(051-888-1263)
	부산광역시 도시철도과	책임자	과 장	연태흠	(051-888-4070)
		담당자	사무관	김수휘	(051-888-4073)
자치단체	대구광역시 예산담당관	책임자	과 장	이상규	(053-803-2440)
		담당자	사무관	장순란	(053-803-2480)
	대구광역시 철도시설과	책임자	과 장	박병준	(053-803-6640)
		담당자	사무관	김학연	(053-803-6641)
자치단체	인천광역시 재정관리담당관	책임자	과 장	김상길	(032-440-5062)
		담당자	사무관	이선희	(032-440-1671)
자치단체	광주광역시 예산담당관	책임자	과 장	박갑수	(062-613-2400)
		담당자	사무관	김양수	(062-613-2190)
자치단체	대전광역시 예산담당관	책임자	과 장	김승태	(042-270-3080)
		담당자	사무관	김진석	(042-270-3100)
자치단체	울산광역시 예산담당관	책임자	과 장	이영환	(052-229-2210)
		담당자	사무관	김주철	(052-229-2240)
자치단체	세종특별자치시 예산담당관	책임자	과 장	박형국	(044-300-2310)
		담당자	사무관	김선경	(044-300-2351)
자치단체	경기도 예산담당관	책임자	과 장	우종민	(031-8008-2120)
		담당자	사무관	고영미	(031-8008-2850)
자치단체	강원도 예산과	책임자	과 장	최우홍	(033-249-2120)
		담당자	사무관	김 현	(033-249-4155)
자치단체	충청북도 예산담당관	책임자	과 장	김수인	(043-220-2210)
		담당자	사무관	우은자	(043-220-2241)
자치단체	충청남도 예산담당관	책임자	과 장	구기선	(041-635-2120)
		담당자	사무관	김옥선	(041-635-3144)
자치단체	전라북도 예산과	책임자	과 장	김철태	(063-280-2120)
		담당자	사무관	이화정	(063-280-2128)
자치단체	전라남도 예산담당관	책임자	과 장	정현구	(061-286-2510)
		담당자	사무관	김은진	(061-286-2560)
자치단체	경상북도 예산담당관	책임자	과 장	신동보	(054-880-2150)
		담당자	사무관	박원석	(054-880-2176)
자치단체	경상남도 예산담당관	책임자	과 장	민기식	(055-211-2410)
		담당자	사무관	조휘제	(055-211-2452)
자치단체	제주특별자치도 예산담당관	책임자	과 장	김인영	(064-710-2310)
		담당자	사무관	김연정	(064-710-2311)
자치단체	경상남도 창원시 예산담당관	책임자	과 장	정양숙	(055-225-2280)
		담당자	사무관	전종렬	(055-225-2282)

참고1

자치단체별 제도 개선 내용 및 시행 시기

※ 조례 개정 및 시행 시기는 시·도별 지방의회 의사일정 등에 따라 일부 변동이 있을 수 있음

구분	표면금리 인상		매입대상 완화	
	내용	시기	내용	시기
서울	2.5%	'23.1.1.	< 공통사항 >	
			① 1,000~1,600cc 미만 비영업용 승용차 신규이전 등록 시 면제 ② 2,000만원 미만 계약 체결 시 면제	'23.3.1.
부산	2.5%	'23.1.1.	< 공통사항 >	
			① 1,000~1,600cc 미만 비영업용 승용차 신규이전 등록 시 면제 ② 2,000만원 미만 계약 체결 시 면제	'23.3.1.
대구	2.5%	'23.1.1.	< 공통사항 >	
			① 1,000~1,600cc 미만 비영업용 승용차 신규이전 등록 시 면제 ② 2,000만원 미만 계약 체결 시 면제	시행 중 '23.3.1
인천	2.5%	'23.1.1.	< 공통사항 >	
			① 1,000~1,600cc 미만 비영업용 승용차 신규이전 등록 시 면제 ② 2,000만원 미만 계약 체결 시 면제	시행 중 '23.1.1.
광주	2.5%	'23.1.1.	< 공통사항 >	
			① 1,000~1,600cc 미만 비영업용 승용차 신규이전 등록 시 면제 ② 2,000만원 미만 계약 체결 시 면제	'23.3.1.
대전	2.5%	'23.1.1.	< 공통사항 >	
			① 1,000~1,600cc 미만 비영업용 승용차 신규이전 등록 시 면제 ② 2,000만원 미만 계약 체결 시 면제	'23.3.1.
울산	2.5%	'23.1.1.	< 공통사항 >	
			① 1,000~1,600cc 미만 비영업용 승용차 신규이전 등록 시 면제 ② 2,000만원 미만 계약 체결 시 면제	'23.3.1.
세종	2.5%	'23.1.1.	< 공통사항 >	
			① 1,000~1,600cc 미만 비영업용 승용차 신규이전 등록 시 면제 ② 2,000만원 미만 계약 체결 시 면제	'23.3.1
경기	2.5%	'23.1.1.	< 공통사항 >	
			① 1,000~1,600cc 미만 비영업용 승용차 신규이전 등록 시 면제 ② 2,000만원 미만 계약 체결 시 면제	'23.3.1. 시행 중
강원	2.5%	'23.1.1.	< 공통사항 >	
			① 1,000~1,600cc 미만 비영업용 승용차 신규이전 등록 시 면제 ② 2,000만원 미만 계약 체결 시 면제	'23.3.1.

구분	표면금리 인상		매입대상 완화	
	내용	시기	내용	시기
충북	2.5%	'23.1.1.	< 공통사항 >	
			① 1,000~1,600cc 미만 비영업용 승용차 신규·이전 등록 시 면제 ② 2,000만원 미만 계약 체결 시 면제	'23.3.1.
충남	2.5%	'23.1.1.	< 공통사항 >	
			① 1,000~1,600cc 미만 비영업용 승용차 신규·이전 등록 시 면제 ② 2,000만원 미만 계약 체결 시 면제	'23.3.1.
전북	2.5%	'23.1.1.	< 공통사항 >	
			① 1,000~1,600cc 미만 비영업용 승용차 신규·이전 등록 시 면제 ② 2,000만원 미만 계약 체결 시 면제	'23.3.1.
			< 추가사항 >	
			① 3.5톤 이하 소형화물차 신규·이전 등록 시 면제 ② 1,600cc 이상 비영업용 승용차 신규 등록 시 요율 완화(6%→4%) ③ 2,000cc 이상 비영업용 승용차 신규 등록 시 요율 완화(10%→5%)	'23.3.1.
전남	2.5%	'23.1.1.	< 공통사항 >	
			① 1,000~1,600cc 미만 비영업용 승용차 신규·이전 등록 시 면제 ② 2,000만원 미만 계약 체결 시 면제	'23.3.1.
경북	2.5%	'23.1.1.	< 공통사항 >	
			① 1,000~1,600cc 미만 비영업용 승용차 신규·이전 등록 시 면제 ② 2,000만원 미만 계약 체결 시 면제	'23.3.1. 시행 중
			< 추가사항 >	
			① 1,600cc 이상 비영업용 승용차 신규 등록 시 요율 완화(8%→4%) ② 2,000cc 이상 비영업용 승용차 신규 등록 시 요율 완화(12%→8%)	'22.12.1.
경남	2.5%	'23.1.1.	< 공통사항 >	
			① 1,000~1,600cc 미만 비영업용 승용차 신규·이전 등록 시 면제 ② 2,000만원 미만 계약 체결 시 면제	'23.3.1.
제주	2.5%	'23.1.1.	< 공통사항 >	
			① 1,000~1,600cc 미만 비영업용 승용차 신규·이전 등록 시 면제 ② 2,000만원 미만 계약 체결 시 면제	시행 중 '23.1.1.
창원	2.5%	'23.1.1.	< 공통사항 >	
			① 1,000~1,600cc 미만 비영업용 승용차 신규·이전 등록 시 면제 ② 2,000만원 미만 계약 체결 시 면제	시행 중 '23.3.1.

참고2

제도개선 기대효과

□ 매입대상 면제

- 1,600cc 미만 승용차 면제시 (예) 아반떼(1,598cc) : 2,000만원

구분	개선 전		개선 후		전국 등록 건수
	채권 매입액	할인매도 손실액	채권 매입	주민부담 감소	
서울시 주민	163만원 (차량가액의 9%)	33만원 (할인율 20%)	면제	33만원	총 76만건 - 신규 28만건 - 이전 48만건
경기도 주민	109만원 (차량가액의 6%)	17만원 (할인율 16%)	면제	17만원	

⇒ 매년 약 76만명의 국민 혜택, 할인매도 손실 부담은 약 800억원* 감소 예상

* '21년 자동차 등록기준, 국민 모두가 채권을 즉시 할인 매도할 경우를 가정
(자동차 가격은 신규 등록 2,000만원, 이전 등록 1,000만원을 가정)

- 2,000만원 미만 계약 면제시 (예) 사업자가 자치단체와 1,800만원 물품 계약

구분	개선 전		개선 후		전국 계약 건수
	채권 매입액	할인매도 손실액	채권 매입	사업자부담 감소	
부산시 사업자	32만원 (계약금액의 2%)	5만원 (할인율 16%)	면제	5만원	약 40만건 (금액 약 800억원)
충북도 사업자	24만원 (계약금액의 1.5%)	4만원 (할인율 16%)	면제	4만원	

⇒ 매년 약 40만명의 사업자 혜택, 할인매도 손실 부담은 약 120억원* 감소 예상

* '21년 자치단체 계약 기준, 사업자가 모두 채권을 즉시 할인 매도할 경우를 가정

□ 표면금리 인상

- 표면금리 1.05%(서울 1%) → 2.5% 인상시 (예) 소나타(1,999cc) : 3,000만원

구분	채권 매입액	할인매도 손실액		주민부담 감소
		표면금리 1%	표면금리 2.5%	
서울시 주민	327만원 (차량가액의 12%)	65만원 (할인율 20%)	39만원 (할인율 12%)	26만원

⇒ 매년 국민 할인매도 손실 부담이 약 2,800억원* 감소 예상

* '21년 매입 규모 기준, 채권 매입자가 모두 채권을 즉시 할인 매도할 경우를 가정